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5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강득구·서삼석·김영호

송재봉 • 한병도 • 윤호중

강경숙 · 전재수 · 한민수

조정식 • 백승아 • 민병덕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생 략)	무)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u>수 있다.</u>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
	위, 절차 등 경비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u><신 설></u>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
	를 구축하여야 한다.